

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

의안 번호	2014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2. 2. 7.

제 출 자 : 달성군수



1. 보고이유

-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위탁기간 만료 도래 및 수탁기관 재계약 의사표시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, 적격으로 의결되어 재계약함을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.

2. 근거법령

- 가.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
- 나.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, 제4조, 제9조

3. 운영현황

- 가. 위 치 : 달성군 논공읍 논공로 252 (달성군청소년센터 3층)
- 나. 운영예산 : 400백만 원(국비 108, 시비 124, 군비 168)
- 다. 운영방식 : 민간위탁
- 라. 수탁기관 : (재)달성복지재단
- 마. 인 원 : 12명(센터장 1, 직원 11)
- 라. 주요업무
 - (1)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·복지지원
 - (2) 중·고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1:1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제공
 - (3) 위기청소년 상담, 긴급구조, 치유프로그램 운영 등

4. 재계약 경위 및 향후일정

- 가. 2021. 11. : 재계약 서류 접수
- 나. 2021. 11. :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(재계약 적정 판단)
 - 심사결과 : 90점으로 재계약 의결(70점 이상시 적격)
- 다. 2022. 2. : 협약 체결 및 공보 게재
- 라. 2022. 3. : 위·수탁 개시
 - 위탁기간 : 2022. 3. 21. ~ 2025. 3. 20.

□ **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(위탁운영)**

- ① 군수는 센터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청소년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청소년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.
-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,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□ **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[정의]**

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4. “재계약”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.

□ **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[민간 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]**

- ③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임사무는 위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 다만, 자치사무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군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군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

□ **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[재계약]**

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, 위탁기간 만료90일 전까지 위원회에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